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6-1호 2003년 6월 19일(목)

제목1: 도축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서류 송부 요망

-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원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사오니 빠른 시일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회사 정관
4. 2001년, 2002년의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영업보고서가 없으시면 재무제표만 보내 주십시오.

보낼 곳 :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축산물등급판정소내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아직 협회비(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료 2%로 대체)를 내지 않은 업체는 동의서를 보내오니 회사직인과 인감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2: 7월부터 도축장 HACCP 의무화 예정대로 시행

농림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도축(계)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거듭 전망했다.

농림부는 일부 미적용 도축장에서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HACCP 도축장에 대한 검역원의 지정을 계속 유지하자는 요구와 관련, 현시점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할 경우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자, HACCP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HACCP 실시를 위해 운용기준 마련을 준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경고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근 축산물작업장 경영자회의를 개최해 HACCP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도축장에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축장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미적용 도축장은 오는 7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태료 1백만원, 영업정지 1~3개월)을 받게 된다.

발췌: 한국정보문화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